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1043
----------	------

2023년 9월 14일
운 영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. 8. 14. 김춘곤 의원(강석주 의원 등 41명 찬성)

나. 회부일자 : 2023. 8. 21.

다. 상정 일자 : 제32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- 2023년 9월 14일 상정·의결(수정 가결)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(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) 지급을 제한하도록 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’을 마련해 각 지자체 조례에 반영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.(2022.12.22.)
- 이에 지방의원 구금과 징계 시 월정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 의 권고에 따라 조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구금상태의 경우에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함.(안 제6조제1항)
-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을 1/2로 감액 지급하도록 함.(안

제6조 제2항)

-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일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함.(안 제6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병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구금과 출석정지 징계 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음.

2 구금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 제한(안 제6조제1항)

- 안 제6조제1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’(2022. 12. 22)을 통해 구속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지급제한을 권고한 것을 반영해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)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¹⁾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임.
- 현행 조례는 의원이 구금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의정활동비²⁾와 여비³⁾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제한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.
- 그동안 의정활동비나 여비와 달리 월정수당이 사실상 급여로 생활급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⁴⁾에서 별도의 지급제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았

1) 월정수당 :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월정수당(서울시의원, 410만원, 2023년 기준)

2) 의정활동비 :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 5 및 조례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경비(서울시의원, 월 150만원, 2023년 기준)

3) 여비 : 본회의 의결,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 별표 6 및 조례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(의원국내여비, 의원국외여비)

4) 국세청은 2006년 유권해석을 통해 의정자료의 수집 및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와 공무로 여행하는 때 지급받는 여비는 소득세

으나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고, 다수의 지방의회가 월정수당 제한 조치를 정하고 있음⁵⁾.

- 변화된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지방의회의원을 향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를 고려할 때 구급기간 동안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됨.

2 출석정지 기간동안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을 1/2로 감액(안 제6조제2항, 제3항)

- 안 제6조제2항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2분의 1로 감액 제한하고, 제3항은 무죄와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이는 지난 5월 청렴성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나, 출석정지 징계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연구 활동 등은 유지되고,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바 있음

5) 강원('23.8.3.시행.), 충북('23.5.12.시행) 충남('23.8.10.시행), 전북('23.6.16.), 전남('23.8.3.시행)

<표-3>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비 변화표

징계 구분	구금(제6조제1항)		출석정지(제6조제2항)	
	월정수당	의정활동비	월정수당	의정활동비
현행	전액 지급(규정x)	전액 지급 제한	전액 지급(규정x)	전액 지급 제한
개정안	전액 지급 제한	전액 지급 제한	1/2 지급 제한	1/2 지급 제한
비고	강화	현행 동일	강화	완화

※단, 징계처분 취소 혹은 무죄 확정 시 월정수당, 의정활동비, 여비 소급 지급

* 2023년 의원 급여(월) : 5,601,240원(월정수당 4,101,240원 + 의정활동비 1,500,000원)

** 출석정지 징계기간 중 의정자료 수집 및 의정연구 활동 등은 유지되고,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수준을 반영함.

- 참고로, 국회의원의 경우 출석정지 기간 입법활동비 등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, 국회질서 유지 위반 등으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을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음⁶⁾.

6) 「국회법」 제163조(징계의 종류와 선포)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공개회의에서의 경고
2. 공개회의에서의 사과
3. 30일(제15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는90일)이 내의 출석정지.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「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당·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(이하 “수당등”이라 한다)는**2분의1을 감액**한다.

4. 제명(除名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제8호·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**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.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**하되,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2. 30일 이내의 출석정지.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,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.

3 종합의견

- 개정안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해 지방의원이 구금되거나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해왔던 관행을 개선해 주민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.
- 또한, 출석정지 기간 동안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는 조치는 형사구금 대비 의정비 지급제한 정도의 형평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.

6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 전원 찬성)

7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 음.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4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4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.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,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<u>여비를</u>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<u>여비를</u>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제3조</u> ----- ----- ----- 월 <u>정수당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석정지 기</u> <u>간에 해당하는</u> --- ----- ----- <u>월정수당</u> <u>의 2분의 1을 감액</u> <u>하고, 여비는 지급</u> <u>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석정지 기</u> <u>간에 해당하는</u> --- ----- ----- <u>여비를 지</u> <u>급하지 아니하고,</u> <u>월정수당은 2분의 1</u> <u>을 감액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<u>여비</u>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월정수당, 여비</u> ----- -----.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”을 “제3조”로, “여비를”을 “월정수당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”을 “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여비”를 “월정수당, 여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